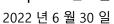
Deloitte.





인도네시아 Tax Info 2022 년 6 월호

인니 국세청(DGT)은 부가세 세금 계산서 관련 신규 규정에 대한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발행함

2022 년 3 월 31 일 인니 국세청(DGT)은 부가세 세금 계산서에 관한 규정 번호 PER-03/PJ/2022(PER-03)를 발행함. (*Tax Alert April 2022* 참조). 부가세 세금 계산서에 대한 처리 및 관리의 간소화와 확실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PER-03 의 조항시행과 관련 여러 가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이와 관련 DGT 는 납세자가일반적으로 찾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FAQs) 목록을 발행함.

다음은 FAQ 에서 다루는 몇 가지 질문임

In this issue:

1. FAQs issued by DGT for the new VAT invoice regulation

Customs Focus:

2. Updates on the ASEAN Trade-In Goods Agreement (ATIGA)

주된 납세지의 경우 부가세 세금 계산서 준비에 사용되는 주소

등록된 사업자의 부가세 관리가 자동으로 주된 납세지로 선정되는 특정 세무서(즉, LTO, STO(특별 세무서) 및 MTO(Kantor Pelayanan Pajak Wajib Pajak Besar/Khusus/Madya(KPP WP BKM))에 등록된 PKP 를 제외한 PKP 는 국세청에 주된 납세지 신청을 할 수 있음. PER-03 제 6조 (6)항 및 (7)항에 의거 공급이 다른 지점으로 진행되는 경우 세금 계산서에 명시된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함:

- 주된 납세지 사업자 PKP 명;
- 주된 납세지 PKP 의 납세자 번호; 및
-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주소

FAQ 는 제 6 조(6)항 및 (7)항은 KPP WP BKM 에 등록된 구매자/공급받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인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관할 세무서에 세무 목적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부가세 세금 계산서에 사용되는 주소는 주된 납세지 PKP 주소여야 함. 상기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PKP 는 불완전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과금이 부과되며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을 구매하는 PKP 는 해당 부가세 세금 계산서 매입 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Article 6(6) and (7) of PER-03 are only applicable for buyer/service recipient which central PKP is registered with KPP WP BKM and the branch where the delivery is made has already obtained NPWP for branch.

부가세 세금 계산서 업로드 마감일

PER-03 은 특정 월에 작성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달 15 일까지 DGT 에 업로드하고 승인 받도록 요구함. 세금계산서에 인쇄된 날짜는 그것이 최초 세금계산서이든 수정 세금계산서이든 상관없이 업로드 및 승인 마감일을 결정하는 일자로 사용됨. 반품 메모(nota retur) 또는 VAT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문서 등 e-Faktur 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않은 문서에는 마감일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세 세금계산서 거래 코드

부가세가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PPN yang dipungut dengan besaran tertentu*) (*Tax Info May 2022* 참조)의 적용을 받는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인도는 세금계산서에서 거래 코드 "05"를 사용해야 함.

소매 PKP 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소매 PKP 기준(pedagang eceran)이 충족되는 경우 소매업 자격을 갖춘 PKP 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승인된 서명자의 이름 및 서명을 포함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FAQ 는 소매 세금계산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용역의 인도가 최종 소비자 특성을 가진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부가세 조세 혜택에 대한 적격 인도 관련 부가세 세금 계산서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용역의 인도가 부가세 조세 혜택 대상이 되지만 혜택시행령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PKP는 거래 코드 "07" 또는 "08"을 사용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규정 기준으로 "기타" 메모를 표시해야 함.

정부는 특정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인도에 적용되는 부가세 조세 혜택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음.

기타 사항

한 달에 동일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월합 세금계산서 (Faktur Pajak Gabungan)는 늦어도 해당 월 말까지 작성해야 함.

FAQ 는 인니 법률 및 규정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시행령이 없는 상황하에서 해당 규정이 발행될 때까지 경과기한 동안 FAQ 를 참조로 사용할 수 있음.

관세 포커스

ASEAN Trade-in Goods Agreement(ATIGA) 업데이트

ASEAN Trade-in Goods Agreement 에 대한 인증 운영 절차의 수정 및 원산지 증명서 Form D 의 수정을 수용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은 ASEAN Trade-In Goods Agreement 에 근거한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절차에 관한 장관령 No. 131/PMK.04/2020 을 수정하기 위해 규정 No. 81/PMK.04/2022 를 발행하였음.

PMK-81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소급 발행에 대한 조항

이전 PMK-131 에 의거 원산지 증명서(CO) Form D는 선적 또는 수출일 이전, 당일 또는 늦어도 3 일 이후에 발급되어야 했으나 PMK-81 에 따라 CO Form D는 선적이나 수출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되어야 함. CO Form D는 특혜관세 부여의 근거가 되는 지정발행기관에서 발행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임. PMK-81 에 따라 발행기관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선적 또는 수입일 이후에 CO Form D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발행기관은 Form 의 "소급발행"란에 체크표시를 하여야 함. 이전에 PMK-131 에 따라 CO Form D는 선적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제한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고 "소급발행"란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었음.

PMK-81 provides policy updates on the provisions of ATIGA regarding Issuance and Retroactive Issuance of CO Form D, Back-to-Back CO, and Retroactive Check starting date.

연결원산지증명서

PMK-81 은 하나 이상의 CO Form D 및/또는 상품 원산지 목록(Deklarasi Asal barang)을 기반으로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전 PMK-131 은 연결원산지증명서가 하나 이상의 CO Form D 및/또는 DAB 를 기반으로 발행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소급 확인 프로세스 시작일

CO Form D 및/또는 DAB 와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소급 확인 요청을 관련 발행기관 및/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이전 PMK-131 에서는 소급 확인 요청된 날짜부터 소급 확인을 처리해야 했으나 PMK-81 하에서는 소급 확인 요청을 받은 날짜부터 소급 확인을 처리해야 함.

PMK-81 은 2022 년 5월 17일부터 발효되며 PMK-81의 경과규정에 따라 PMK-131의 첨부 A에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발행된 CO Form D는 유효하며 PMK-81 규정에 의거 처리됨.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Business Tax

mehimawan@deloitte.com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Budi Prasongko bprasongko@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Muslimin Damanhuri mdamanhuri@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II. M.H. Thamrin Kay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